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8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이형석·양기대·김성주

송갑석ㆍ허 영ㆍ홍성국

이용빈 · 이해식 · 문진석

양향자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인상율이예년에 비해 높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세력이 상대력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추가적인배려가 요구되고 있어, 이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 고자 함(안 제122조의2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특례) ① 6 5세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122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1.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7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7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 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

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개정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2조의2(1주택 장기보유 고령
	자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특
	례) ① 65세 이상인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10
	년 이상 소유한 주택[제4조제1
	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u>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u>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한다]의 경우에는 제122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u>징수할 세액으로 한다.</u>
	1.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
	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
	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
	의 107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7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
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이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